

#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69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3월 22일

제출자 : 자치행정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가. 노사민정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실무위원 수를 사용자 측과 균등하게 구성하도록 단서규정 마련

## 2. 주요골자

가. 안 제11조(실무협의회의 설치) 제3항의 단서를 신설.

“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”

나. 안 제11조(실무협의회의 설치)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수정.

“1.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”

“2.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”

다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##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(실무협회의 설치) 제3항의 단서 “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”를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호 “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”와 제2호 “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”를 각각 “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”, “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1조(실무협회의 설치) ③ 실무협회의 위원장은 노사·고용정책·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&lt;신 설&gt;</p> <p>1. <u>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</u></p> <p>2. <u>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</u></p> <p>&lt;이하생략&gt;</p>	<p>제11조(실무협회의 설치) ③ 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위촉한다. <u>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</u></p> <p>1. <u>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</u></p> <p>2. <u>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</u></p>